

2026년도 1월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IBT) 실시 안내

1. 시험일자 : 2026. 1. 26.(월) ~ 2. 2.(월) (총 6일간 운영*)

* [서울] : 6일간 운영 (1/26, 1/27, 1/28, 1/29, 1/30, 2/2)

* [부산/대구/광주/대전] : 4일간 운영 (1/26, 1/27, 1/28, 1/29)

1/26(월)	1/27(화)	1/28(수)	1/29(목)	1/30(금)	2/2(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부산	X	X
대구	대구	대구	대구		
광주	광주	광주	광주		
대전	대전	대전	대전		

2. 시험지역 및 장소 : 전국 5개 IBT 상설시험장

지역본부	시험지역	시험장	차수별 접수인원
수도권본부	서울	서울IBT시험장	67명
영남본부	부산	부산IBT시험장	60명
대구지부	대구	대구IBT시험장	60명
호남본부	광주	광주IBT시험장	60명
중부본부	대전	대전IBT시험장	60명

* 각 시험장 수용인원은 시험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응시 관련 중요 유의사항 >

- [시험장 도착] 변액IBT시험은 특성상 시험시작 후에는 절대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15분 전부터 입실 가능, 필히 10분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착
 -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시어 시작 전에 꼭 입실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
 - * 특히, 전국IBT 시험장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신분증 관련] 新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히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 시험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시험장에서 확인되어야 응시 가능

※ 기타 응시신청 및 안내사항 등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신청

가. **응시신청기간*** : **2026. 1. 12.(월) 10:00 ~ 1. 16.(금) 16:00**

* 응시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신청 불가 (종료시간 유의)

나. 응시신청자격 :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집종사자 : 응시 신청 현재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의 모집종사자 : 응시신청 현재 해당 생명보험회사에 재직 중일 것

※ (1) 또는 (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신청을 무효 처리

다. 응시신청 방법 : 개별신청

(1) 응시희망자가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2) “응시희망자가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생명보험회사 신청담당자”는 “자격시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 대해 필히 전산 사전등록” 후 “재직증명서(<첨부3>양식)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4>양식)를 기한내 제출”

- 전산 사전등록기간 : **2026. 1. 8.(목) 09:00 ~ 1. 9.(금) 18:00**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6층 생명보험협회 채널지원부
자격관리팀 노훈철 수석(02-2262-6577) / notae@klia.or.kr

- 제출기한 : **2026. 1. 23.(금) 17:00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참고사항 :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각 생명보험회사의 본사에서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제출

< 응시신청시 유의사항 >

- 응시신청시 기재한 내용은 협회에 등록된 정보(임·직원은 재직증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신청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즉시 협회 자격관리팀에 응시신청 정상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재직증명서 등(생명보험회사 임직원)을 지정된 기한내에 협회로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신청시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 금번 시험 응시자는 시험 응시일 전후 7일 이내에 시행되는 일체의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IBT시험 포함)에 중복으로 응시할 수 없음
 - ※ 중복응시 신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라. 응시(신청)취소 : **2026. 1. 19.(월) 10:00 ~ 1. 20.(화) 16:00**

마. 응시(신청)수수료 : 응시신청자 **1인당 40,000원**

4. 시험응시자 안내사항

가. 시험시간 : 60분

차 수	시험시간	비 고
1차	09:30 ~ 10:30	-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필히 입실 완료 - 시험시작 이후에는 절대 입실 불가
2차	10:50 ~ 11:50	
3차	13:20 ~ 14:20	
4차	14:40 ~ 15:40	
5차	16:00 ~ 17:00	

* 각 시험장 운영차수는 시험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시험문항 : 40문항(문항당 배점 : 2.5점)

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규정신분증) 원본***

* **[신분증]** 상기 신분증은 응시자의 성명, 전체 주민등록번호, 사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어야 함
(상기 신분증 외 특이 신분증 및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회 확인 필요)

* **[新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불가한 “**新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반드시 여권정보 증명서를 지참**”하여 시험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응시 가능

※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

- ① 신분증 사진 촬영본, 복사본, 스캔본 등 원본이 아닌 신분증 인정 불가
- ② 유효기간이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은 유효기간내의 신분증만 인정 (갱신기간 초과 운전면허증 인정불가)
- ③ 정부24, PASS 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주민번호 전체, 성명, 사진이 확인 되는 경우 인정가능
- ④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윌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주민번호 전체, 성명, 사진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가능
- ⑤ 차세대전자여권('21.12.21~)은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를 모두 지참하여야 응시 가능
- ⑥ 장애인 복지카드의 경우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신분증형' 장애인 복지카드만 인정 가능
- ⑦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응시 가능
 - a. 출입국관리법상 국내거주권이 인정된 외국인(F-2, F-5, F-6) 및 재외동포(F-4)
 - b. 비자종류가 표시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소지
(비자가 표시되지 않은 운전면허증만 소지할 경우 시험응시 불가)
 - c. 반드시 응시신청된 이름과 신분증에 표기된 이름이 동일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신청 이름과 신분증 상의 이름이 표기법(영문/한글)의 이유로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지참하여 신청한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모두 확인 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 허용, 미지참시 응시불가

(1) 신분증 원본 미지참시 입실 및 응시 불가 (사본, 사진으로 대체 불가)

(2)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외국국적자의 경우 신청 성명과 신분증상 성명이 다를 경우 시험 응시 불가

(3) 응시신청전산자료상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다른 경우

- 신청자료와 신분증 정보가 모두 다른 경우 : 응시불가(무효 처리)
- 신청자료와 신분증 정보가 일부 다른 경우 예외적 허용

i) 성명 : (한글) 세글자 중 **한글자 이하** 오기인 경우
(영문) 이름 중 **알파벳 세글자 이하** 오기인 경우

ii) 주민번호 :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 중 **3자리 이하**로 잘못 입력한 경우*

* 생년월일, 성별 오기재자는 무조건 응시 불가 (채점시 발견되는 경우에도 생년월일, 성별 오신청자의 경우 해당 시험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라. 제한사항

(1) 응시신청자는 응시신청 종료 후 시험일자·시험차수를 변경할 수 없음

(2) 응시신청자는 해당 시험시간 시작 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

※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마. **응시표 출력 : 2026. 1. 19.(월) 10:00부터 협회 자격시험센터에서 조회 가능**

바. IBT(Internet-browser Based Test) 응시 관련 규정은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대한 시행세칙”을 준수

5. 부정행위 및 무효처리 등

가. 시험 대리행위자 (신청인 포함)

(1) 변액보험 판매자격 취득자 : 형사고소, 자격취소 및 3년간 응시제한

(2) 변액보험 판매자격 미취득자 : 형사고소, 3년간 응시제한

나. 부정행위자

(1)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기준에 따라 최대 3년간 응시제한

(2) 대리응시 외 중대 문제유출 및 지시불응의 경우에도 형사고소되며,
최대 3년간의 응시제한

※ 세부 부정행위 유형 등 내용은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참조

다. 기타사항 : 기재사항 오류, 신분증 미지참 등의 경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자

나. **합격발표 : 시험당일 17:30 이후 협회 자격시험센터에서 조회**

첨 부 : 1.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제재 기준 1부.
2. 생명보험협회 지역본부 및 지부 현황 1부.
3.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응시신청용 재직증명서(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끝.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제재 기준

I. 부정행위 유형

유형	내용
대리 응시	가.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문제 유출	가. 시험 중 음성,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문제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려주는 행위
	나. 문제지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다. 메모, 촬영, 녹음(사용 도구를 불문) 등의 방법으로 문제지 및 답안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록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 운영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지시 불응	가. 시험 중 음성,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해 시험장 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나. 시험 중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시험 중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라.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거나,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마.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메모 등)을 소지 또는 이용하거나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와 이를 주고받는 행위
	사.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아.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행위
	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차.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II. 부정행위 제재 기준

구분	행위자			행위자의 관리자	행위자가 속한 지점*										
	보험설계사	임직원	응시자												
대리응시 (신청인 포함)	자격취소, 응시제한(3년)	자격취소, 응시제한(3년), 정직 요구	자격취소, 응시제한 (3년)	견책 요구	관여자 수에 따른 응시제한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관여자 수</th> <th>응시 제한</th> </tr> <tr> <td>1~2명</td> <td>1개월</td> </tr> <tr> <td>3~4명</td> <td>2개월</td> </tr> <tr> <td>5~7명</td> <td>3개월</td> </tr> <tr> <td>8명 이상</td> <td>6개월</td> </tr> </table>	관여자 수	응시 제한	1~2명	1개월	3~4명	2개월	5~7명	3개월	8명 이상	6개월
관여자 수	응시 제한														
1~2명	1개월														
3~4명	2개월														
5~7명	3개월														
8명 이상	6개월														
문제 유출	중대 응시제한(3년), 업무정지 요구 (3개월 이상)	응시제한(3년), 정직 요구	응시제한 (3년)												
	경미 응시제한(2년), 업무정지 요구 (1개월 이상)	응시제한(2년), 감봉 요구	응시제한 (2년)												
지시 불응	중대 응시제한(2년), 업무정지 요구 (1개월 이상)	응시제한(2년), 감봉 요구	응시제한 (2년)												
	경미 응시제한(1년), 자율조치 요구	응시제한(1년), 견책 요구	응시제한 (1년)	감사실 통보	-										

*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1년 이내(제재 적용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산정)에 부정행위가 재발된 경우, 상위단계의 응시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직전 제재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 자격(취소) : 변액보험 판매자격 / 업무(정지) : 변액보험 판매활동

Ⅲ. 중대 부정행위 건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일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에 관여된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 보험회사등의 지점 관리자 또는 본사 임직원이 부정행위에 관여된 경우(부정행위 지시 포함)
대리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대 부정행위 건으로 판단
문제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 각호의 경우 중대 부정행위 건으로 판단 (1) 문제를 유포할 목적으로 시험지 전체를 유출하는 행위 (2) 통신기기, 녹음·녹화기기, 그 밖의 통상적인 전자기기가 아닌 도구[다른 용도의 물건의 외형을 한 전자기기(안경형 카메라, 볼펜형 녹화·녹음기 등), 초소형 전자기기 등]를 이용하여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문제 저장)한 경우
지시불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 각호의 경우 중대 지시불응 건으로 판단 (1) 응시자의 지시불응으로 감독관이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시험을 중지(5분 이상)하거나, 감독관의 경고 후에도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지시불응 가.~마.」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3회 이상)으로 행하는 경우

Ⅳ.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기준

- 대리응시의 경우 형사고소를 원칙으로 한다.
- 그 외의 부정행위의 경우
 - ‘Ⅲ. 중대 부정행위 건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문제유출 및 지시불응의 경우 형사고소를 원칙으로 한다.

Ⅴ. 상기 제재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 등

- (1) ‘행위자’는 부정행위를 직접 행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조한 자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응시자 : 시험 응시자(등록 말소자 및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포함), 그 밖에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연루자로서 ‘보험설계사’ 및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보험설계사 :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조(보험설계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다) 임직원 : ‘응시자’ 또는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2) ‘행위자의 관리자’는 행위자가 속한 보험회사 등의 본사 또는 지점(센터)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부정행위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의 관리자’가 부정행위를 직접 행사하거나 지시·보조하는 등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 중 ‘임직원’의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3) 위 표에 의한 제재와는 별도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대리응시의 경우 시험신청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4) ‘보험설계사’, ‘임직원’, ‘행위자의 관리자’의 경우 위 표에 의한 제재와는 별도로 소속 보험회사 등의 감사실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5) 협회는 제재기준에 따른 제재를 각 제재 대상자의 소속 보험회사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6)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적용일의 기준은 아래 각 목과 같다.

가)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부정행위 발생일부터 적용

나) 부정행위 발생일 이후 추후 적발된 건은 협회의 제재 통보일부터 적용

다) ‘해당지점 자격시험 신청 금지’의 시작일은 가목 및 나목 적용일 익일 부터로 한다.

(7) 시험 중 응시생이 통상적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놓은 행위가 적발된 경우, 응시생에 대해 퇴실 조치를 실시하고 응시생의 해당시험은 무효로 처리한다.

<첨부 2>

생명보험협회 지역본부 및 지부 현황

구 분	주 소
수도권 본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7층 T:02-2262-6570, F:02-708-0203, 우편번호 : 03129
영남 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범천동 ABL부산타워) 8층 T:051-638-7801~2, F: 051-633-7801, 우편번호 : 47353
대구 지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남산동 ABL대구타워) 11층 T:053-427-8051, F:053-427-8052, 우편번호 : 41966
호남 본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양동 KDB생명빌딩) 7층 T:062-350-0112~4, F:062-350-0110, 우편번호 : 61925
중부 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둔산동 삼성생명빌딩) 14층 T:042-242-7002~4, F:042-242-7005, 우편번호 : 35209
원주 지부	강원 원주시 원일로 160 (학성동 교보생명빌딩) 4층 T:033-761-9672~3, F:033-761-9671, 우편번호 : 264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명보험협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집 · 이용할 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회사, 부서명, 직위,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집 · 이용목적

-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신청, 시험이력 관리, 합격자 조회 등 시험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생명보험협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